

폐기물 수집·운반증 발급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①대표자	②생년월일
	③주소(사무실)	(전화번호:)
	④상호	⑤업종

⑥수집·운반 대상 폐기물	⑦폐기물 운반예정량	⑧폐기물 운반장소	⑨사용(연장)기간

폐기물 운반차량개요

⑩차종(명)	⑪소유자 (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	⑫제작사	⑬형식승인 번호	⑭최초 차등록일	⑮차량 등록번호	⑯최대 적재량(톤)
⑰차량증 발급번호·유효기간		발급번호:		유효기간: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

[] 전용 폐기물 수집·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
[] 임시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,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. 차량의 앞면,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(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3. 수집·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(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차량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요령

1. ①, ②, ③,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(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)을 적고 공동수집·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·주민등록번호·소재지·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.
2.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세세분류)에 따른 업종명을,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,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"공공처리시설"로,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"재활용"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.
3. ⑥란은 수집·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, 성질·상태를 액체 상태이면 "액상"으로, 고체상태이면 "고상"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.
4.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(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)으로 적되,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/일 또는 톤/월로 적어야 합니다.
5.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